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3호 2023. 8. 28(월)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3-12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소로3-22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745호 남원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변경)지정·공고(안) 행정예고-----2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3-12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 소로3-22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소로3-22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1일
남 원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2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23	6	국지 도로	157	대로1-5 노암동 811	중로2-5 노암동 807-11	일반 도로	-	남원시 고시 제2022-80호 (2022.06.17.)	
변경	소로	3	223	6	국지 도로	157	대로1-5 노암동 811	중로2-5 노암동 807-11	일반 도로	-	남원시 고시 제2022-80호 (2022.06.17.)	선형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223	소로 3-223	◦선형변경 - B= 6m, L= 157m	◦도로 개설 현황 및 대지분할 지적선을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조정함에 따라 기존 노선을 현실화

2.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2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23 - 1745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남원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변경)을 지정·공고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지정·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변경) 지정·공고(안) 행정예고

1. 지정(변경)이유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및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9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남원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지역을 최소화하여 지정(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초 : 남원시 전 지역
-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타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경우 포함)
- 지정기간 : 2023. 9. ~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 2023. 8. 28(월) ~ 2023. 9. 18(월) / 21일간
- 공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 공고/공고 게재(www.namwon.go.kr)

3.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 별지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3. 9. 18(월)까지

나. 제출기관 : 남원시청 건축과 건축팀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전 화 : 063)620-6582, FAX : 063)620-6719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인 경우 행정예고 기간 만료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다. 기 타 : 제출기일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